

第289回國會
(臨時會)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23日(金)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계속)
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2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2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28.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계속)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행정입법 검토의 건(계속)
52. 업무현황보고
 - 가. 한국전력거래소
 - 나. 한국석유관리원
 - 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라. 기초전력연구원
 - 마. 한국생산성본부
 - 바. 한국표준협회
 - 사. 전략물자관리원

審査된案件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웅전 의원 발의)(계속) 5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5
3. 遞信窓ロ業務の委託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5
5.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6.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노영민·변재일·조정식·김종률·김낙성·김희철·유성엽·이상민·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5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우남·윤석용·김동철·강기정·김재윤·신낙균·신학용·김희철·박선숙·오제세·이인기·손범규·황영철·안상수·이진삼·이재선·우제창·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5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김성순 · 안상수 · 박영선 · 김종률 · 장세환 · 김충조 · 신학용 · 이한성 · 유성엽 · 김진표 · 박기춘 · 이진삼 · 박선숙 · 이화수 · 조영택 · 김성곤 · 김영진 · 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5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정영희 · 유성엽 · 구본철 · 김재경 · 이윤석 · 이인기 · 홍일표 · 김효재 · 유재중 · 신성범 · 정해걸 의원 발의)(계속) 5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 · 강기갑 · 광정숙 · 권영길 · 김재경 · 문국현 · 배영식 · 변재일 · 유성엽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5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김소남 · 김정훈 · 나경원 · 성윤환 · 안홍준 · 양정례 · 유승민 · 이한성 · 임동규 · 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5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양승조 · 송영길 · 김재윤 · 송민순 · 이미경 · 김영진 · 최문순 · 최철국 · 강창일 · 김동철 · 홍재형 · 이성남 · 김상희 · 유성엽 · 원혜영 · 박은수 · 김재균 의원 발의)(계속) 5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김유정 · 주승용 · 최철국 · 김재균 · 강기정 · 송민순 · 문학진 · 박선숙 · 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6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김재윤 · 송민순 · 이미경 · 최영희 · 최철국 · 박은수 · 최문순 · 강창일 · 홍재형 · 김진표 · 정장선 의원 발의)(계속) 6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고승덕 · 이한성 · 강석호 · 김정훈 · 임동규 · 권영세 · 정진섭 · 이경재 · 김소남 · 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6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변재일 · 장세환 · 강창일 · 전병현 · 서갑원 · 김영진 · 안민석 · 양승조 · 이낙연 · 김동철 · 우제창 · 김성곤 · 박은수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6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철국 · 이춘석 · 박은수 · 우윤근 · 이시종 · 강창일 · 이윤석 · 김재균 · 김영록 · 김영진 · 김동철 · 박상돈 · 장세환 · 양승조 · 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6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강창일 · 박은수 · 최철국 · 양승조 · 송민순 · 강기정 · 김재윤 · 김영진 · 장세환 · 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6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 · 오제세 · 김영진 · 권영길 · 유원일 · 강기갑 · 광정숙 · 홍희덕 · 장세환 · 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6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 · 나성린 · 박민식 · 이진복 · 고승덕 · 손숙미 · 오제세 · 현기환 · 이종혁 · 이인기 · 김태환 · 이한성 · 정진섭 · 김정훈 · 김성태 · 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6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영환 · 최규성 · 최영희 · 송훈석 · 전해숙 · 장세환 · 조정식 · 김창수 · 김성곤 · 강봉균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6
2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권선택 · 김낙성 · 김동철 · 김용구 · 김재윤 · 김창수 · 노영민 · 변용진 · 안상수 · 오제세 · 우제창 · 이낙연 · 이명수 · 이시종 · 이재선 · 이진삼 · 임영호 · 정병국 ·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6
2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이명규 · 강석호 · 김성곤 · 이화수 · 안홍준 · 정영희 · 정하균 · 홍일표 · 송광호 · 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6
2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김우남 · 안상수 · 윤석용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김충조 · 정해걸 · 박기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6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한선교 · 이성현 · 이명규 · 김무성 · 박민식 · 안상수 · 안경률 · 신학용 · 주성영 · 허원제 · 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6

2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6
28.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종·강기갑·강기정·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선택·권영길·김낙성·김성 수·김영선·김영진·김용구·김우남·김재균·김진애·김창수·김춘진·김충조·김학용·박민 식·박상돈·박선숙·변용전·송영길·신성범·양승조·여상규·오제세·이계진·이윤성·이찬 열·유승민·유성엽·유원일·이명수·이상민·이용경·이용섭·이재선·이정현·이정희·이춘 석·임영호·정갑윤·정병국·정해걸·조배숙·조승수·조영택·조진래·주승용·최구식·최규 식·최병국·최연희·허천·홍영표·홍준표·홍희덕·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6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조진래·이한성·김성수· 손범규·손숙미·안상수·이경재·유성엽·박준선·이인기·이화수·장제원·신성범 의원 발 의)(계속)	6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나성린·배은희· 안상수·유기준·이한성·정병국·정해걸·조문환·주성영·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6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3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상 민·홍재형·임영호·박상돈·김종률·유성엽·진성호·양승조·박대해·김재윤·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7
3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3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유승민·박민식·고승덕·이 한성·이인기·강용석·주승용·김우남·정수성·이명규·신영수·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7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한성·조원진·성윤환· 안경률·김성수·김정훈·김성희·이종혁·이명규·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7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기 정·양승조·최철국·강창일·장세환·박은수·김동철·김영록·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7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 갑·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영길·양승조·유원일·정동영·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7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옥 임·고승덕·허천·홍영표·신학용·이종혁·이계진·안형환·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7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최영희·김재윤·양승조· 장세환·김진애·김재균·김영진·김성곤·김우남·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7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4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인기·이해봉·유승민·박종근· 유기준·임영호·이한성·정갑윤·구상찬·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7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서상기·정갑윤·조진래·이학재· 이명규·임동규·배은희·이철우·정해걸·권성동·김성조·주성영·김효재 의원 발의)(계속)	7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송영	

길·추미애·강기정·홍일표·김성순·유성엽·김종률·강석호·박선숙·김성수·최문순·최철국·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7
51. 행정입법 검토의 건(계속)	18
52. 업무현황보고	19
가. 한국전력거래소	
나. 한국석유관리원	
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라. 기초전력연구원	
마. 한국생산성본부	
바. 한국표준협회	
사. 전략물자관리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장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국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계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용진 의원 발의)(계속)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3.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5.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노영민·변재일·조

정식·김종률·김낙성·김희철·유성엽·이상민·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우남·윤석용·김동철·강기정·김재윤·신낙균·신학용·김희철·박선숙·오제세·이인기·손범규·황영철·안상수·이진삼·이재선·우제창·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김성순·안상수·박영선·김종률·장세환·김충조·신학용·이한성·유성엽·김진표·박기춘·이진삼·박선숙·이화수·조영택·김성곤·김영진·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정영희·유성엽·구본철·김재경·이윤석·이인기·홍일표·김효재·유재중·신성범·정해걸 의원 발의)(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재경·문국현·배영식·변재일·유성엽·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김소남·김정훈·나경원·성윤환·안홍준·양정례·유승민·이한성·임동규·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양승조·송영길·김재윤·송민순·이미경·김영진·최문순·최철국·강창일·김동철·홍재형·이성남·김상희·유성엽·원혜영·박은수·김재균 의원 발의)(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김유정·주승용·최철국·김재균·강기정·송민순·문학진·박선숙·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김재윤·송민순·이미경·최영희·최철국·박은수·최문순·강창일·홍재형·김진표·정장선 의원 발의)(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고승덕·이한성·강석호·김정훈·임동규·권영세·정진섭·이경제·김소남·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변재일·장세환·강창일·전병헌·서갑원·김영진·안민석·양승조·이낙연·김동철·우제창·김성곤·박은수·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철국·이춘석·박은수·우윤근·이시종·강창일·이윤석·김재균·김영록·김영진·김동철·박상돈·장세환·양승조·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창일·박은수·최철국·양승조·송민순·강기정·김재윤·김영진·장세환·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오제세·김영진·권영길·유원일·강기갑·곽정숙·홍희덕·장세환·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나성린·박민식·이진복·고승덕·손숙미·오제세·현기환·이종혁·이인기·김태환·이한성·정진섭·김정훈·김성태·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영환·최규성·최영희·송훈석·전혜숙·장세환·조정식·김창수·김성곤·강봉균·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2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김낙성·김동철·김용구·김재윤·김창수·노영민·변용진·안상수·오제세·우제창·이낙연·이명수·이시종·이재선·이진삼·임영호·정병국·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2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명규·강석호·김성곤·이화수·안홍준·정영희·정하균·홍일표·송광호·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2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김우남·안상수·윤석용·송민순·양승조·장세환·임두성·김충조·정해걸·박기춘·김성순·이미경·박선숙·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한선교·이성현·이명규·김무성·박민식·안상수·안정률·신학용·주성영·허원제·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2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8.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종·강기갑·강기정·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선택·권영길·김낙성·김성수·김영선·김영진·김용구·김우남·김재균·김진애·김창수·김춘진·김충조·김학용·박민식·박상돈·박선숙·변용진·송영길·신성범·양승조·여상규·오제세·이계진·이윤성·이찬열·유승민·유성엽·유원일·이명수·이상민·이용경·이용섭·이재선·이정현·이정희·이춘석·임영호·정갑윤·정병국·정해걸·조배숙·조승수·조영택·조진래·주승용·최구식·최규식·최병국·최연희·허천·홍영표·홍준표·홍희덕·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조진래·이한성·김성수·손범규·손숙미·안상수·이경제·유성엽·박준선·이인기·이화수·장제원·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나성

- 린·배은희·안상수·유기준·이한성·정병국·정해걸·조문환·주성영·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상민·홍재형·임영호·박상돈·김종률·유성엽·진성호·양승조·박대해·김재윤·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3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유승민·박민식·고승덕·이한성·이인기·강용석·주승용·김우남·정수성·이명규·신영수·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한성·조원진·성윤환·안경률·김성수·김정훈·김성희·이종혁·이명규·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기정·양승조·최철국·강창일·장세환·박은수·김동철·김영록·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영길·양승조·유원일·정동영·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옥임·고승덕·허천·홍영표·신학용·이종혁·이계진·안형환·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최영희·김재윤·양승조·장세환·김진애·김재균·김영진·김성곤·김우남·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인기·이해봉·유승민·박종근·유기준·임영호·이한성·정갑윤·구상찬·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서상기·정갑윤·조진래·이학재·이명규·임동규·배은희·이철우·정해걸·권성동·김성조·주성영·김효재 의원 발의)(계속)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송영길·추미애·강기정·홍일표·김성순·유성엽·김종률·강석호·박선숙·김성수·최문순·최철국·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정장선 어저께 늦게까지 우리 법안소위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현안이 되었던 SSM 관련 법안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신 노영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법안심사소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입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배은희 위원, 이명규 위원, 이종혁 위원, 김재균 위원, 이영애 위원, 이학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하여 지경부제2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 법률안의 청원 등 36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7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밖

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 동 법률안에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수정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에 '우체국예금 및 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문장 표기를 한글화 및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대하여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담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에너지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직급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7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률안과 동 법에 관한 청원 및 결의안은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2건의 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SSM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 끝에 만들어진 대안으로서 현 상황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의 대규모점포 등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상생 차원의 사업조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보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진래 의원·성운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사업 또는 석유대체사업의 등록취소 등이 있는 후 명의만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종전 영업시설을 재활용하여 등록이나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제를 도입하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제출안 중 유가보조금 관련 부분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나중에 위원회안 등으로 독립적으로 제안하

는 방식을 고려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기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원희룡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고, 향후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 조정하여 업종의 전문성·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장 입후보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던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 이정희 의원 및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되, 지식경제부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체인점포의 범위를 정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서 체인점포 개점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한정토록 부대의

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위탁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창업 의무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토록 하며,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 및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되, 상담센터가 수행할 심판·소송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의 업무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유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는 2010년 4월 23일 오늘 현재 전통상점가 리스트가 39개입니다. 따라서 이 39개의 전통상점가 리스트로 한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수정의견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 소위원회들이 하나 간과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위에서 합의를 했을 때는 SSM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의한 등록을 규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서 규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생법에서는 위장된 가맹점형의 SSM도 사업 조정대상으로 포함하였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장된 가맹점형의 SSM이 진입하는 경우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허점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도 상생법에서와 같이 위장된 가맹점형의 SSM을 규율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1995년 WTO GATS가 발효된 이후에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거의 6년간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최경환 장관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이나 전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정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정식 공동대표, 어제 모두 같이 최종적인 안을 도출하는 데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양보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 주셔서 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영민 위

원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빠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통산업법 먼저 토론을 하고 다른 것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먼저 토론을 마친 뒤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님!

○배은희 위원 정부에 질의하겠는데요, 수정의견의 제2조3호의2나목 이거 검토하신 건가요? 어제 이것을 자구를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어제 제가 법안소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그것은 저도 아침에 와서 봤는데요, 지금 노영민 위원님하고 김기현 위원님하고 설명을……

○배은희 위원 아니, ‘나’목……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나’목이요?

○배은희 위원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어제 논의에서 자구를 정리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넣어서……

○배은희 위원 검토하신 의견입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검토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다’ 항목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아 봤고요, 이 내용은 GS같이 준대규모점포가 체인사업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다’목에 대해서는 어제

상생법에 들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생법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장선**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를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의결을 먼저 한 다음에 논란이 많은 유통산업법 이것을 맨 뒤로 빼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생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맨 뒤로 늦춰 놓고 나머지를 먼저 의결한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많이 이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국방위처럼 무슨 큰 돌발상황이 없는 한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어서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법안은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죽 보시기 바랍니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 전체를 1조부터 시작해서 17조, 부칙까지 한번 죽 검토를 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은 나중에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3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제33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항하고 35항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39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넘어간, 제34항, 35항을 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3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36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항~4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나중에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및 4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46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49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이미 동 법률에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건의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님!

○**배은희 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 연결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32조2항이 “대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게 맞습니까?

이거 확인만……

제2조제5호에 따른 거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장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어수선히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상생법 32조2항에 신설된 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 “제2조제5호”,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제2조5호에서 체인사업을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직영 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질문하실 때는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지 지정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된 사항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줄다리를 해 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이 있고 또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현재도 아직 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덜 된 부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첨예하고, 또 우리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야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도 많이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 간담회, 공식 간담회도 여러 차례 걸치고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도 직접 듣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특히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정부 부처 중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는 이견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남은 숙제 이기는 합시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영민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 의견, 제2조3호의2다목을 거기에 신설해서 넣어야 된다 하는 취지 자체가 이해는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전통상점가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략 한 3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서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첨부를 해 가지고……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부대의견으로 제안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한꺼번에 이것이 오늘 수정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장선 질문이 아니셨군요.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또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또 브레이크 거는 일은 없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합의를 본 겁니까? 장관님, 지난번과 같이 또 이런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직 정부 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우선 전통산업지역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상점가의 500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내 사정을 설명을 하고 국제규범에서 양해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에서 외교통상부를 적극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마련해 주신, 정말 고뇌에 찬 고심과 고심 끝에 마련해 주신 이 안이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이종혁 위원님!

○이종혁 위원 장관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그동안의 술한 논의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정부 각 기관들의 의견들도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법안소위가 상생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늘 내놓은 대로 심의 의결을 했지만 외교통상부가 마지막까지 견지하는 입장은 뭐냐면 ‘상생법에 소위 사업조정제도를 완화시킨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여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교통상부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경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내

용은 사업조정 내용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좀 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SSM을 위시한 대기업의 위탁경영식의 체인점 이것까지 규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만 다른 류의 체인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식경제부령으로써 그런 범위는 규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룬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상생법 때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가서 그 당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고려한 여러 가지 정신들이 다 제거·삭제된 채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도 가장 고뇌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외교통상부가 서민이고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기타 4700만의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국제규범 속에서 수출로 먹고살아가는 나라의 입장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 법이 법사위원회나…… 또 법사위원회에 가면 외교통상부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장관님으로서 이 내용과 그동안에 어떤 산고를 거쳐서 이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조승수 위원님!

○조승수 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짧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안을 제·개정할 때마다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된 안을 개정된 안으로 동의하셨다는 얘기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경부의 입장이 아니고 현 정부의 입장을 장관이 대표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내에서 법안의 제·개정 과

정의 동의 여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장관이 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을 다른 부처에서 반대해서 법사위에서 그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것은 시스템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부로서도 두 가지 얘기를, 한 가지를 놓고 두 가지 목소리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지금 우리 지경위원회뿐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법사위하고 위원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느끼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일차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법사위에 가면, 거기서도 소위에 회부가 되면 차관이나 청장이나 관계관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의 얘기도 듣고 중기청이나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판단을 하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

물론 그러면 정부가 더 기민하게……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대응을 그렇게 기민하게 원활하게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차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부처장관이 얘기할 때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대표해서 답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은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지경부장관께서 다른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문제인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정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관계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제 어렵사리 합의해 주신 이 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경부장

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위원** 두 번째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지경위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상인단체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말하자면 공식·비공식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조승수 위원** 지경부의 대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상인단체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조승수 위원** 약속한 게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없습니다.

○**조승수 위원** 제가 들은 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없습니다.

○**조승수 위원** 작게는 이른바 스마트샵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약속 또 좀 더 크게는 상인단체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유통센터의 건립·설립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 없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비공식 약속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투 트랙으로 간다, 한 트랙은 특히 전통상점가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출점 속도를 제한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트랙은 출점 속도만 제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동시에 시행을 한다, 이런 큰 방침을 말씀을 올렸는데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스마트샵 문제니 그다음에 공동물류센터니 등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지원책이 되지만 지금 이른바 정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은 일정정도 규모를 가진, 그나마 슈퍼마켓 중에서도 중소상인 중에서도 일정정도 규모를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몇몇의 대표들이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관철되는 데 동의하는 데 말하자면

제가 볼 때 회유수단으로서, 물류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명백하게 회유수단으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런 내용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훨씬 더 수많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밝혀질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제가 중소기업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보완을 하실 경우, 여기에 보면 총 비용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에 한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첫째는 그동안 사업조정제도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상생협력 법안에 규정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청장께서 위원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됐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일단 가맹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주되 51%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전체 비용의 한 80%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51% 이내로 제한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개설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점 진출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조정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이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조정제도가 너무 제한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국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 또 SSM 측의 의견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합리적인 방안 등은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작년 7월 이후부터 사업조정제도를 각 지방 지자체 중

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 등은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위원님, 다른 질의 더 계십니까?

없으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의결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39개 리스트를 회의록에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장선** 어떤 리스트를……

○**김기현** 위원 39개 전통상점가 리스트……

○위원장 **정장선**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노영민 소위원장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제28항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률안 등 2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제29항 대안에 노영민 소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 부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대의견 넣도록.

○**조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저희가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수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위원 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장선** 토론 아직 다 안 했어요? 아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승수** 위원 그것은 질의라고 계속 위원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장선**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아니, 토론은 의결과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장선** 죄송합니다, 제가 아둔해서, 저는 같은 건 줄 알고……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조승수 위원** 조승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당기간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고심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정의견까지 포함해서 지경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인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이른바 경제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에까지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 허가제여야 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이고 저 역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소위의 안은 허가제적 성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이 문제,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마는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은 현행법 혹은 WTO·GATT 협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은폐해 왔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영업품목 제한을 통해서라도 허가제와 같은 성격의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영업시간도 규제사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일몰제 규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현재 통과되는 제도로 해서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보호될 것이며 3년 후에 이 일몰제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이 조금의 보완장치가 사라진 다음에는 무차별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 정말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 전반이 그렇듯이,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난 시기 골목상권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대형유통점으로 정리되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되어

서 직영점, 지금은 가맹점이라는 이런 변종으로 자본이 끊임없이 자기이윤 추구를 위해서 해 가는 이런 시장질서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이것을 전혀 통제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법과 제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전반의 안이 설사 제가 제안했던 허가제로 완전히 정착되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수단으로 충분히 저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못 하고 실제로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전에 없었던 개념으로 전통상점가 39개가 들어갔습니다. 마는 39개의 전통상점가가 과연 어떻게 규제될 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이른바 전통상업구역 내에 진출하자는 계획이 30% 정도라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통계조차 사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인근은 굳이 SSM이나 가맹점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자생력 있는 토착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대기업의 SSM이 전통상업구역에까지, 재래시장에까지 들어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지는 500m 이내의 조항도 저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여야가 고심은 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이종혁 위원** 저도……

○**위원장 정장선** 이미 찬성의견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입니까?

○**배은희 위원** 찬성의견보다도 저도 의견을……

○**이종혁 위원** 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金容九 委員** 의사진행, 의사진행!

○**위원장 정장선** 의사진행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이 법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지금 현재 여기다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또 어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상인 대표와 슈퍼마켓 대표가 참석해서 소위원장께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4월 국회를 또 넘길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 시점에서 양보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암만 논의해 봐야 시간만 끄는 거고 어떤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위원장 정장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또 발언하시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조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제 상인 대표들이 있는 데서 저희가 다 토론을 했고, 관련해서 저는 정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어제 저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영업시간이나 품목제한을 안 넣는 이유는 지금도 품목제한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법조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에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 하는 게 아닌 이상 법에 넣지 말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조정하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개정하고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제조항 넣는 것 6월에 의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지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될 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논의가 됐고 상인 대표들이 있는 데서 저희가 다 클리어(clear)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장선** 이종혁 위원님, 지금 장관께서 가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혁 위원** 아니, 내가 이 부분은……

○**위원장 정장선** 잠깐만, 내가 취지는 다 이해하겠고요.

○**이종혁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과 관련되어 저희 당이 법안 소위에 임하는 저희들 소위 위원들에게 전한 우리 당의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

리가 가장 고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를 존중하라는 게 우리당이 저희들 소 위원에게 준 입장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울러서 뭐냐 하면 WTO나 GATT 국제협약의 규범 이런 것들이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들도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2개 법안에 임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 2개의 법안이 통과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 보호를 위해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은 줄기차게 소위원회에서 국제협약과 규범에 의한 제소 가능성을 끝까지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런 제소까지를 각오하는 소위 사회적 약자와 서민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결의까지를 집어넣은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조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저께 여기에 전국소상공인네트워크 회장, 그다음에 협동조합, 관련된 모든 대표자들이 법안 소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와 같은 저희들의 숙고와 고뇌 끝에 나온 이 법안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다, 그리고 그 동의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장선** 여기서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민노당 입장을 말씀하시고 한나라당 입장을 말씀하시면 또 민주당 입장을 말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의 그만하시고요 꼭 필요하신 말씀 하실 분만 하십시오.

○**金容九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정장선** 예, 김용구 위원님!

○**金容九 委員** 분명히 알고 넘어갈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한다는 것은 더 얻으려다가 이것마저 못 얻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조승수 위원의 질의에서 나온 그것을 보면 8개 분야에 대한 상품이라는 소멸 상품, 또 시간 제한이라든

가 이것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전혀 안 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안 되는 것으로 외통부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마저 잃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그나마도 동의를 하는 것이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끝만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회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좀 더 논의해 가지고 치열한 선택을 하겠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장선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노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

○소위원장 노영민 우리 조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 대도시의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는 그 기점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점가를 포함시켰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전통시장 500m가 대부분의 중소지역 권역을 현실적으로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500m가 있으나마나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500m를 이렇게 컴퍼스로 그러면 그 중소도시가 대부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기서 벗어나는 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게 돼 있는데 품목을 우리가 제한하지 못한 것은 범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WTO에서 우리가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논의하더라도, 오늘 이 정도의 법안도 사실상 6년 걸린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또 법이 미비해서 더 보완해야 된다는 소

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승수 위원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0항 내지 4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제43항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큰 짐을 덜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법안 처리 실적이 매우 높은 위원회로 평가받은 것은 특히 우리 노영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아주 높은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그동안 많은 법안을 처리해 주셨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이명규 위원님, 이종혁 위원님, 배은희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도 소위원회에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51. 행정입법 검토의 건(계속)

(10시57분)

○위원장 정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령 등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는 국회법상의 제도로서 지난번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오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지식경제부 등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계서는 방금 의결된 행정입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계서는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행사 때문에, 회의 때문에 먼저 떠났습니다. 차관계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또 차관계서 그때 신임 인사를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지요? 신임 인사 겸해서 잠깐 해 주세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말 오랜 논의를 거듭해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중소기업 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라는 진짜 그러한 지혜를 모아서 의결이 돼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되고 저희는 정부 모두가 중소기업 상인의 보호와 함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임채민 차관에 이어서 지금 차관이 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책을 맡은 데 대해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차관 되셨는데, 어려울 때 차관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청장께서도 전임 홍석우 청장은 SSM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갔는데 신임 청장님은 다

해결되니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씀 겸해서 앞으로의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장기간 미제 과제로 있던 우리 상생법과 또 유통산업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조정제도라는 집행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가급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호 문제 또 아울러서 육성 문제를 동시에 충실히 이행을 하고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경위 상임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자, 이제 법안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분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장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 업무현황보고

가. 한국전력거래소

나. 한국석유관리원

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라. 기초전력연구원

마. 한국생산성본부

바. 한국표준협회

사. 전략물자관리원

○**위원장 정장선** 의사일정 제5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기관은 7개의 기관입니다. 기관

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기관들을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또 뜻 깊은 게, 저희가 오늘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관인가 할 정도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전략물자 관리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국방부 소속인 줄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기회가 없으면 업무 내용조차 모를 그런 기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께서는 한 7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7분씩이나? 5분씩으로 해요.

○위원장 정장선 줄여요?

○박순자 위원 예.

○위원장 정장선 그러면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짧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나 5분 정도로 해서 보고를 요점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염명천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공정·투명한 전력시장의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서 2001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 운영, 전력시장 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결정 기구로는 회원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조직은 2본부 5처 2실에 중앙급전소와 천안과 제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290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수입 748억 원, 지출 762억 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사 이전 추진비 등 170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여섯 가지 주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전력수급의 안정 도모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최대 전력은 이상저온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6321만kW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6953만kW로 예상합니다.

이에 공급능력 확충과 수요 관리 등을 통해 600만kW 이상의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력 수요자원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전력 수요자원시장이란 전기 소비자가 수요 절감량을 입찰을 통해 제시하고 전력거래소가 낮은 가격 순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 36만kW를 감축해서 설비 투자비용 366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시 실시로 전환하고 45만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2015년까지는 80만kW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기 전력수급 안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정부는 매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력거래소는 그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2024년까지 15년이 계획 기간이며, 향후 전력수급분과위 등 5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시안수립과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공정·효율적인 전력시장의 운영입니다.

전력시장의 규모는 민간 발전사들의 참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발전 연료비 급등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발전원의 과다 이익을 방지하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고 기타 필요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력산업 녹색성장의 선도입니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그리드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력거래소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 수립과 제주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인 RPS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6월 중 공급인증 주관기관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태양광시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기능을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하는 등 정부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 주관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로 조만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비해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하고,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협력을 진행하는 등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국형 계통 운영 시스템인 K-EMS의 개발입니다.

전력 IT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형 계통 운영 시스템인 K-EM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앞으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본사 이전 시 계통 운영 시스템 교체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하에 정원……

○**위원장 정장선** 기타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그러면 이상으로 전력거래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이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식경제 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석유관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관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기술상무이사 되겠습니다.

(임원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의거 석유제품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83년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최초 설립되어 2005년도에는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증가에 대처하고 석유대체연료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 추진으로 2009년 5월 특수법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 관리와 유통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 검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본사에 3층 1실 1센터를 두

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해서 전체 207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2010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원의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10억 원으로 수입은 품질검사 수수료 등 자체 수입 262억 원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보조금 48억 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는 사업비·인건비·관리비가 230억 원, 자본예산 65억 원, 예비비 15억 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원의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비전은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석유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검사 효율제고, 유통관리체계 확립, 조사연구기능 강화, 경영 효율화 선도라는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주요 업무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효율제고입니다.

2010년도 품질검사계획은 석유사업자 8만 6000건과 비석유사업자 4000건으로 전체 9만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원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 수법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지능 검사반과 유사석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별제와 착색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은 유사 경유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전자계산기 등에 리모컨 조작 스위치를 설치해 불법으로 유사 석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노출검사·시험차량 등 첨단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야간 및 휴일 등에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서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유사 석유 제조 원료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톨루엔, 메탄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용제 불법 유통에 대한 추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석유제품 사용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해서 불법 소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업무는 신규로 석유 유통관리 업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유통검사계획은 연간 2500업소 수준으로 2009년도에는 5월 1일부터 유통검사를 신규로 시작해서 1582업소를 검사하고 불법 유통 219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2009년도 불법 유통 적발률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석유 유통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단 1명의 인력 증원 없이 내부 인력 24명을 전환 배치해서 가장 시급한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는 현장 단속 인력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석유 품질 향상 및 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도입 방안 마련 연구와 바이오에탄올, DME 등의 도입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석유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LPG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협력 및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자원부국에 한국형 석유품질관리시스템을 기술이전

하는 사업과 한·중·일 석유기술회 한국 개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및 윤활유 분야의 국가산업기반을 선진화하고 대체연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KS 등 표준 개발·연구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보수체계 합리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짧은 시간과 지면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예산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주요 업무·현안 보고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및 향후 계획, 기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 2페이지입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원자력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반현황하고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죄송합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6페이지입

니다.

다음, 주요 업무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입니다.

우리 재단은 에너지 선진국 달성을 위한 국민화합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국민신뢰 구축기반 확대, 차세대 교육기반 확충, 원자력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능력 제고, 위상과 전문역량의 제고 등 4대 사업 목표 아래 차세대 이해 증진 사업의 전국화 등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신뢰 구축 사업입니다.

원전 비중 확대 등 주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서 원자력 관련 뉴스와 교양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원자력 정보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IT 홍보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시찰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장, 김기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이해 증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 원자력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나 체험학습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원자력 관련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8년 12월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차세대 원자력 이해 교육 사업을 재단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원자력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서에 원자력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탐구올림피아드, 에너지카라반, 원자력페스티벌, 원자력공모전과 같은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원자력에 관한 체험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식 협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국내외 원자력 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원자력 정책 수립과 원자력 인식 개선 사업에 활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UAE 원전 수출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정기적인 국민 인식 조사와 월간 추이 조사를 시행 분석해서 정책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원전 수출 지원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는 원전 수출 대상국에 그동안 축적된 저희들의 홍보 노하우를 매뉴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수출 대상국 인사 초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 선진국과는 지속적으로 국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 효율화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재단은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68명에서 51명으로 감축하고, 대졸초임을 12.6% 삭감하는 등 실천했습니다.

또한 지원부서를 축소하여 사업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였고, 관리업무비 비중을 대폭 감축하는 등 경영 효율화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홍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재단의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 활동을 통해 원자력 국민 인식은 재단 창립 초기인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30.5%에서 71.1%로, 거주지 수용성에 대해서는 12.4%에서 31%로 향상되는 등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원전 수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재단도 대책 사업 추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다음으로 기초전력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존경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으로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전력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설승기입니다.

업무현황의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사업추진 기본방향, 셋째 주요 업무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의 설립 목적은 전력산업에 관련된……

○위원장대리 김기현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시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지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그러면 일단 저희들 연혁과 기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986년에 80억 원을 출연받아서 89년에 연구원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이사회와 3개실, 2개의 센터, 4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실과 관리실만 상근조직이고 다른 조직은 각 대학의 교수들이 비상근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특징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의 2010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이 161억 9700만 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8억 2900만 원입니다. 총수입이 170억 2600만 원이고 지출은 수입 지부와 동일합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에 있는 사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목표는 연구역량 강화와 내실화로 정했습니다.

산업체 수요와 연계하여 연구과제를 다변화하고 전력 선행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 활성화, 연구 시험 설비의 확충과 시험 연구 기능의 특성화,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내실화하여 사업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부문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부문 목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 그다음에 기업 과제 참여 강화,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과제 추진, 전력 선행 기술 사업을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입니다.

시험설비 확충 부문은 IEC 기반의 종합피뢰시험설비를 구축하고 공기정화기 통합성능 인정 규격 시험설비를 구축코자 하며 시험인증 부문은 시험항목 추가와 전문평가사 양성, 공기정화기 오존 방출 전문 시험기관 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교육 사업 부문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문 단기강좌를 강화하고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 지향적인 전력 IT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분야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일반수탁과제는 50건으로 계약금액이 60억 7000만 원이고 계약기관은 전력 관련 회사와 연구기관 등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85종의 연구장비와 3600여㎡의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각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교육 사업으로 국제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내용의 단기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549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전력회사의 중간관리자를 교육하는 전력산업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서 최근 3년 동안 약 7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력 IT 인력 양성은 83개 강좌로 현재 364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력 선행 기술 사업입니다.

전력 분야 기술개발 저변 확대를 통한 기술 수준 향상과 지방대학의 연구인력 협력을 통한 지역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분야는 7개 전력기술 분야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70억에서 80억 원 내의 금액으로 60~70건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7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대학의 관련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성과로는 최근 4년간 국제논문 약 133편, 국내논문 809편, 국외논문 278건, 그 외 지적재산권 출원 91건, 등록 3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전력 선행 기술 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 창출을 통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미래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화나 상용화 실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관리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의 시험연구동 신축 사업입니다.

피뢰 전문 시험기관 육성과 고전압 시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연구 시험 시설 구축과 대형 연구과제의 시험 부지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천전력IT 산업단지 내 지상 3층, 756㎡ 규모의 연구 및 지원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4억 5500만 원이 예상되며 설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일정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동규입니다.

생산성본부는 57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86년부터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구조를 보면 정부 의존도는 매년 저희들이 자체 고유사업을 열심히 해서 비중을 점차 조금씩 줄여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 정도 국가직접보조금 비중이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필요한 국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내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제가 온 지가 이제 1년 4개월째입니다.

생산성본부가 국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 중심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존중의 새로운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적극 보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주도하는 경제성장모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경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덜어 보려고 생산성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생산성경영 인증체제를 중소기업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올해는 한 1000개 정도를 목표로 중소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서 생산성 향상 운동 붐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작년에는 한 3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정부 지원에 의해서 PMS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씨앗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약 1000개 정도를 목표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생들에게도 무료로 생산성에 대한 편하고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생산성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난해부터 적어도 기업에 1명 이상의 생산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마인드를 가진 핵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성 파이오니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1사 1인 목표의 무료 생산성 향상 핵심 인력 양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60여 명을 양성했고 올해는 한 1000명 정도 양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속가능경영지수를 다우존스와 SAM사와 함께 지난해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월드시수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30개 정도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약 6개 정도 포함된 수준에 있습니다.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존중 생산성세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APO 이사회, 올해 대한민국이 의장국입니다, 의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하루 일정을 앞당겨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 APO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PO 국가 간의 서로 협력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고, 특히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우리 한국이 APO 내에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PAPA와 조만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

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개발원조인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 생산성 운동의 경험을 후발개도국에게 적극 전파하고 우리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혁신 프로젝트를 2차 사업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튀니지 정부의 혁신 프로젝트를 곧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보조사업은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내실 있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사업은 APO와 생산성 통계 그리고 생산성 대상, PMS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내실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보다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투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민간의 여러 부문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위상을 결코 잃지 않고 이 교육 컨설팅 관련 사업들이 서로 커갈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인증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ICDL이라든가 ITQ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중심의 컨설팅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컨설팅 분야가 아직 중소기업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기업 중심의 이런 컨설팅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특히 녹색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컨설팅 기법을 더 개발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준협회 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한국표준협회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표준협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기능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 연구와 보급 촉진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 298명의 직원으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기업과 국민에게 창조적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가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조·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고객중심, 성과중심, 지속가능 경영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5대 분야의 핵심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2010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추진 내용별로 정리한 내용으로서 3쪽 이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을 위한 산업표준 보급 및 연구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표준보급촉진사업을 수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 기술 기준의 도입을 촉진하고 민간 표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표준정책을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산업기술의 표준 제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포럼을 운영하여 표준 개발 능력과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촉진하고 전문기관을 표준화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 표준을 국내에 신속히 보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온라인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보급함으로써 민간 표준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간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표준지원실을 운영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표준화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표준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일상생활 속 표준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를, 대학생에게는 대학 정규 과정에 표준화 강좌를 신설하고 있으며, 표준전문가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표준인력 육성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혁신기법 확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도사업을 수행하며, 6시그마, TPM 등 선진 생산기법을 산업계에 보급하여 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설비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관련 산업에 확산하고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는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품질인의 품질 향상 활동을 진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정보포털인 국가품질망을 구축하여 품질정보와 개선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품질 문제 해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에 전파하고 있으며 최근 토요타 사태로 인해 품질의 중요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품질분임조 활동을 안전과 연계토록 하고 해외 협력기업의 품질 활동을 보강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 유관기관과 국제품질협력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최신 정보와 선진 품질 기법의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인증사업을 운영하여 국산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2008년 5월부터 서비스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KS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콜센터 등 5개 분야의 인증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ISO 품질, 환경경영 등 국제인증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LOHAS 인증제도를 자체 개발하여 정부의 지속가능정책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상품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서비스품질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비스산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계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진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업인력의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와 품질경영 부문에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여 7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00만 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산업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진로설계, 취업역량 강화, 이공계 취업지원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대학과 기업으로부터 높은 호응과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TPM, 6시그마와 같은 분야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선진 정보와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산해 오고 있으며 ASTD와 같은 해외인력 자원개발 컨퍼런스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업의 인적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9쪽,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팀 1 지역본부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왔으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녹색성장, 이 러닝, 취업역량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션 오리엔트(mission orient) 조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폐지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켰으며 휴가규정 등의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와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원가 절감 활동인 TOP 활동을 전사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인턴사원의 채용과 임시직 정규화를 합리

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안정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1인 1학습제를 의무화하여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나눔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정 운동과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실천을 강조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원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원은 2007년 6월 대외무역법 29조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것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부터 보고드립니다.

수출통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통제의 배경은 대량과피무기 확산 방지와 국제안보의 핵심 어젠다이며 지난 주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47개국 핵안보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출통제는 이러한 확산 방지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공급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 바세나르체제 등이며 우리나라는 모두 가입하여 회원국입니다.

UN안보리 결의 1540호는 국제수출통제는 국제규범화로 각국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업체는 국내외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은 1987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개통해서 판정, 허가 등 모

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회의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통제 리스트가 약 500여 쪽이 되는데 매년 수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경부 전략물자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이나 전략물자 판정·허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 기업과 관계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 그리고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전략물자 판정업무의 필요성은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Yestrade를 이용해서 자가판정서비스에서 자기 품목이 해당 품목인지를 70~80%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저희 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합니다. 2009년 사전판정 처리 건수는 2787건이며 내부 전문가 15명 외에 외부에서 약 2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이 수출통제의 모든 것을 처리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며 해외에서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수출통제 동향 조사와 국제체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는 국제사회에서 유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제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 주요국 정부, 주요 저널 등 약 32개 소스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 소스를 분석하여서 뉴스레터 발송,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과 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체제 확산 지원입니다.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기업 내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안내하고 구축하려는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며 자율준수무역거래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 수출통제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금년도 실시 예정이며, 산업기술의 유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물류보안 표준이행 확산 사업입니다.

전략물자 관리가 지금까지는 수출국에 의한 통제로부터 수입국의 물류보안인증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는 국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ISO28000 이행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UAE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품목에는 핵무기 개발이나 중동의 테러분자들이 획득하려는 품목·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의 수출통제규범에 따른 수출 관리, 건설현장 관리, 건설 후 인계 관리를 준수하도록 국제법 위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핵심 사업입니다.

금번 원전수주 컨소시엄 업체들이 건설·전력 업체로 대부분 전략물자에 대해서 생소하고 원전 관리 대상품목이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 등 행정수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1차 7분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경제부의 지금 배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실장님,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님, 그리고 허경 기술표준원장님, 정재훈 산업경제정책관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철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자료……

○위원장대리 김기현 예, 그러시지요.

○최철국 위원 사실 오늘이 지경위 실질적으로 마지막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논의되고 또 지적되고 한 사항들 이것을 다음 지경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고해서 업무 개선

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경부에서 누가 총책임을 질 겁니까? 정재훈 정책관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제가 총괄해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맡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도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직을 맡으니까 오늘 논의된 게, 그래야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토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업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또 지경위원회에 보고되어서 계속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꼭 이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다음에 전력거래소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그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 스마트그리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이것을 지능형전력망으로 좀 바꿔서 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논의된 것을 다음 지식경제위원회에 잘 보고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라는 이유가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말 써서 되겠느냐,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이독경 식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경부의 에너지자원실장이 책임지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경부 직원들이나 또 관계하는 관계기관의 직원들이나 우리 지경위 위원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하고 있지요,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실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홍보되는지 모를 것 아

니예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홍보 내용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스마트그리드' 하고 '스마트 스마트' 계속 나오고, 이게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스마트그리드라는 텔레비전 홍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사실 실질적으로 마지막이지마는 우리 지경위에서 지적되는 이러한 사항들,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 수준에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적도 하고 개선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지경위 해요, 이 시간 들어가면서?

시민단체에서 혹시 나와 계세요?

이 지경위 2년 끝나고 다음 또 다른 사람 오면 새롭게 모를 거다,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경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경부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고 잘 수행되기 위해서 고언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어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스마트그리드라는 말은 사실 뭘 말인지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고객니즈 반영이라고 해 놔는데 그걸 꼭 니즈라고 써야 되는지, 고객의 필요 혹은 요구사항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스마트그리드라는 용어는 매우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적절한 용어를 잘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최철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국 위원** 우선 전략물자관리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금년 4월까지 수출통제 위반으로 사범 처분 받은 기업이 25개 업체지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예, 맞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2008년에만 21개 업체가 사범 처분을 받았습시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전략물자관리위원장 심성근** 2008년도에 경찰들이 불법 수출업체를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된 업체들이 많아서 25건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철국 위원** 아니, 어떤 때는 검찰 경찰에서 다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2008년도만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모르지요, 이유를?

이것은 지경부의 무역투자실장이 하나요?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예.

○**최철국 위원** 왜 그런지 이유를 아나요?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저희가 2007년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을 했을 때 상황허가라든가 중개허가, 구매관리제도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이 돼 가지고요, 그 새로운 제도가 도입·시행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그 새로운 제도를……

○**최철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경찰이 더 많이 조사를 해서 그렇다, 사실 지경부에서 이렇게 사범 처분하고 조사되는 기업을 전략물자관리원에 정보 공유를 하나요? 안 하고 있지요?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그러니까 불법 수출한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대외무역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정보는 제공을 안 하고요.

○**최철국 위원** 무슨 규정이 있다고요?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대외무역법 27조에 보면 불법 수출한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어디다 제공 못 한다고요?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철국 위원** 아니, 외부에 공표를 하지 못하지만 전략물자관리원에는 알려 줘야……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그래서 저희가 기업 정보의 상세한 것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 침해 사례라든가 또 통계 자료 이런 것은 제공을 해서 전략물자관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해당 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전략물자관리원에는 통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원에 통보가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서로 공유 안 하고 기업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다음에 원자력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목표 제1번이 국민신뢰 구축기반 확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예.

○**최철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UAE 원전 수출한 것 정말 국가적인 쾌거지요. 정말 잘한 일이지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홍보의 제1기분이 뭔지 아세요? 신뢰 아납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예, 동의합니다.

○**최철국 위원** 사업목표 제1순위가 국민신뢰 구축기반의 확대구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 수주액을 얼마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문화재단에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두 가지지요. 4기 원전 건설공사는 200억 불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60년간 운영하는 데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액이 200억 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참, 그……

보니까 말이지요. 원전수주 관련 조사를 했어요. ‘지난 12월 27일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따로 2단계로 뭘 해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발간한 ‘원자력이 녹색성장을 이끌어요’, 많은 홍보 책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UAE 원전수출금액을 400억 달러, 약 47조 원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원자력문화재단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정부를 믿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강봉균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하는 내용 들었어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잘 모르겠는데요.

○**최철국 위원** 어허, UAE 원전수주 관련 금액 정부에서는 200억 불, 그다음에 한전에서는 186억 불, 강봉균 의원은 그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세요,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원자력에 관련되는 인식이 높아지겠어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다음에 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수여하고 있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 위원** 신청비 500만 원 받고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최철국 위원** 그다음에 수상 부문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참가비, 광고비 또 1000만 원 받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최철국 위원** 이런데, 보니까 2008년에 한국서비스대상 신청한 기업이 24개고 2009년에 20개였는데, 수상을 한 기업이 똑같은 기업이 그 부문에서 2008년에는 그대로 다 수상을 했고요, 2009년에는 1개 말고는 19개가 다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돈 많은 기업은 수상을 하고 신청비 외에 참가비, 광고비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 없는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수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국민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KS인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기업에서 돈 많이 내고 대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 좀 고칠 필요가 없나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말씀하신 대로 KS인증은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서비스 인증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상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서비스대상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10년 전에 저희가 대학과 지표를 개발을 해서 MB모델이라는 말콤볼드리지(Malcolm Baldrige) 모델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아니, 심사 지수는 있는 것 알아요. 조금 전에 말한 서비스품질지수대상도 얘기할까요?

거기 보니까 2008년에 68개 기업이 1위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수상식에 참여한 기업은 42개 기업, 2009년에는 38개에 그쳤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1위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수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서비스대상이나 서비스품질지수대상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 돈 때문에 혜택을 받거나 돈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도 쓰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그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서비스 개발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점이 지경부하고는 얘기가 많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평가기준과 그 참여의 적정성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돈을 내고 공익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아니, 기준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침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수천만 원 돈을 내야 되니까 계속하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돈 많은 기업,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돈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참여 엄두도 못 내고, 또 이게 본인이 알고 보니까 일반 관리비뿐만 아니고 인건비까지 기업이 부담하는 꼴이 되고……

이것은 지경부에서도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지요?

이것 좀 시정을 하세요.

일반적인 서비스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큰 참가비나 광고비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알겠어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장 허경** 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한 가지 나머지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최철국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九 委員** 기초전력연구원장님.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金容九 委員** 2008년도 5월과 8월에 파생상품에 54억 투자했습니까?

(김기현 간사, 최철국 간사와 사회교대)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맞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어떻게, 손해가 많이 났네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많이 났습니다.

○**金容九 委員** 22억 원 났는데, 손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누가 이 책임을 집니까?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당시는 제가 원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원장에 2008년 12월에 취임하고 그 사항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해에는 22억의 손해가 있었지만 그 직전 해에는 그것 이상의 수익을 저희들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통계나 아니면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시면 전체로는 저희들 운영자금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하고, 위원님들이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하시면 저희들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임자가 하셨다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08년도 이 당시에는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내부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08년에는 투자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자금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것은 그 후 2009년도에 만드신 것 같은데, 2008년도는 없었지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니까 이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54억씩이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더군다나 개인회사도 아니고 내부규정도 하나 없이

했다는 것은 참 큰 문제고, 2009년도라도 다행히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잉여금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왜 2008년도에 50억을 또 은행에서 차입을 했네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에 대응 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용 건물을 사야 했습니다. 교육용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자금을 그 교육용 건물을 사는 데 전액으로 거의 대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전액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5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억을 갚았고 현재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자금을 일부 부동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저희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지금 현재도 파생상품에 투자된 게 있지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내부규정을 만들 적에 원금의 5% 이상이 결손이 나면 즉각 회수하기로 이렇게 지금 내부규정을 만들었지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8.19%가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회수하지 않습니까?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 이미 들어갔던 것이고, 우리 관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만기일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면 그것을 회수 안 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상품은 현재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한 1800 선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손실 없이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투자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력연구원이 연구원이냐, 재테크하는 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재정적인 건전성이 저희들 고유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만일 재정적인 건전성이 없으면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전력에서 출연 받은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현재 총 한 90억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金容九 委員**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9년도에 연구장비의 사용시간은 1만 5910 시간인데 2008년도는 3만 227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줄었던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장비가 노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장비 같은 것을 보장해 가지고 본연의 연구에 충실해야지 재테크하는 데 정신이 팔려 가지고 연구는 뒷전이고 장비도 개선도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 그 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 간판만 연구원이고 재테크하는 것이냐, 그것도 벌었으면 좋겠는데 22억이라는 큰 돈을 잃어버리고 결손이 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표준협회 회장님, 초창기에는 각 산업체에서 K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KS 마크가 상당히 품위가, 명성이 저하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년도 4월 현재 한 41건 중에 전부 또 수도권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거야 산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KS에 대한 실효성이 일반인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깊이 개선을 한다든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들이나 민간인들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 데가 많으니까 경쟁이 되어 가지고 뺏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보다도 공신력이 있다는 표준협회에서 자꾸 민간인보다 못하게 KS 마크에 대한 것을 국민이 인정하는 게 이렇게 저하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가서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고개를 끄덕임)

○**金容九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위원** 전략물자관리원이 사실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는 인원도 가장 적고 예산도 적은데, 제가 아마 작년에 국정감사 때 예스 트레이드(Yes Trade)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보안 취약성 문제를 지적해서 그때 좀 놀랐지요, 갑자기 그런 얘기 나와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지적한 다음에 혹시 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보안감사든 아니면 검사든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그때 정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화면 뜨는 게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이 필요한 게 4개가 필요했는데 그중에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남아 있는 것을 다 끌어 모아서 4000만 원으로 3개를 조치하였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달에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태근 위원** 사실은 저희 직원이 상당히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 보고를 하신다기에 저희가 또 한 번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여전히 취약한 점이 발견이 됐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자꾸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경부에서 원래 한 것이거든요. 원래 전략물자관리과에서 시스템 구축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상에서도 몇 가지가 또 추가로 검증이 됐고, 생산성본부도 마찬가지로 또 전력거래소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경부에서 지적한 그것만 꼭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 대한 보안검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내서 고치셨

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국회의원이 그거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안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언젠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상에 결함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공에서 쓰는 시스템 때문에 민간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경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산하기관 것도 다 한번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물자 중에 기술 수출통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책자거든요. 여기 별표에 기술통제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책자를 봐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기술통제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가 안 되는가’,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야 맞습니까?

○전략물자관리위원장 심성근 지금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도 사실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해서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출연기관 중에서 큰 데 중요한 데 세 군데를 해서 시범 전략기술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기술이 국제적인 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2800개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신이 이러 이러한 기술이 있느냐’ 조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근 위원 잘하셨네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판정 실적도 한 열여섯 번뿐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전략물자 중에서 물품보다도 기술 수출통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제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거래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략물자 관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분들도 또 지적을 하실 텐데, 전력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력거래소가 사실 만약에 발전자회사가 통합된다 그러면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정태근 위원 그렇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예.

○정태근 위원 큰 차이라고 보면 큰 차이이고 작은 차이라고 보면 작은 차이인데, 실제로 선진화 추진하신다고 해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력거래소가 연봉도 그리고 초임도 실제로 공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지요, 발전자회사들에 비해서도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 떨어져 나올 때 상위계층 인력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그 뒤로는 정부의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근 위원 나머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서면질의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석유관리원에 대한 질의도—경영평가에 대한 것이거든요—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비 중에서 실제로 해외의 원전 관련해서 홍보한 예산은 작년에 한 800만 원뿐이 안 쓰셨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예.

○정태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전체 사업 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적은 비중, 93억 포함 예산이면 적은 비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우리 원전의 안전성,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해외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그동안에는 해외에 대한 홍보에 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UAE 원전 수주 이후에 앞으로는 해외에 원전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출대상국의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해서 우리의 우수성을 홍보

보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IAEA에 방문했습니다 마는 IAEA에서 저희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 관련 국제문화행사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한국 원자력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근 위원 그리고 기초전력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거 아까 존경하는 김용구 선배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각별히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서면질의로 하겠고요.

생산성본부하고 표준협회에도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정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장님, 외국에서 어저께 들어오셨다면서요?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어제……

○임동규 위원 APO 이사회 의장국으로 회장님 맡고 계신 겁니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순서대로 하는데 1년간씩 말합니다. 올해부터 내년 4월 회기까지……

○임동규 위원 본부장님은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청장도 역임하셔서 중소기업 쪽은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생산성에 대해서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생산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좀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30개국을 가지고 보면 22등입니다. 우리보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라면 체제 전환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임동규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정부에서 한 1.93, 2% 정도 지원받아서 PMS 인증사업, 이 PMS 인증

사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등급을 판정한 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맞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맞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실적이,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이것을 과연 받으려고 그러겠는가, 본인 부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중소기업청으로 넘기는 것은 어때요?

중기청의 누가 이거 답변을……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야지 이것 실제 생산성본부에서, 예산도 얼마 안 주고 1년 해 봐야 2009년도에 한 35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왕이면 정부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청에서 해야지 이걸 생산성본부에서 해 가지고 될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답변 좀 해 봐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성향상지원사업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중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됐는지 국가적으로 처음에 시범케이스로 할 경우에만 생산성본부에서 1차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중기청 예산으로 넘겨서……

○임동규 위원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 17억뿐이 안 되지만 중기청에서……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저희는 7억만 PMS에……

○임동규 위원 아, 7억? 그렇지, 그 분야에.

그러면 진짜 중소기업들의 기술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중소기업청에서 나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생산성본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방법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지경부하고 중기청에서 협조를 해서 PMS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바로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올해 그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의존보다는 정말로 PMS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PMS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업 현실에, 특히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끔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생산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증이 이루어지고 거기다 인센티브까지 연결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규 위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중소기업들이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올해 1000개를 목표로 하고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임동규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로 뭘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신용보증의 경우에 보증요율을 낮춰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연결됩니다.

○**임동규 위원** 하여튼 뭔가 중소기업들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활용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관리원, 2007년도 6월에 설립이 됐지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예.

○**임동규 위원** 그런데 감사의견서를 보면 2007년도 2월 13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썼단 말이에요, 설립도 안 될 당시에.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쓸 때 잘못 쓴 거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한번 보셨습니까?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감사의견은 아마 저희들이……

○**임동규 위원** 2007년 2월 13일인데?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는데 그 감사의견인 것 같습니다.

○**임동규 위원** 아니, 의견이 아니라 날짜가 안 맞는데, 2007년 6월에 설립된 회사가 2007년 2월에, 그러니까 6월에 설립해서 2월에 감사보고가

나오면 안 되지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립되기 전에……

○**임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직이 감사를 한 번도 안 받고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예.

○**임동규 위원** 그다음에 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임동규 위원** 김용구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 표준협회도 지금 자체감사만 하는 거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 위원** 외부감사가 없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있습니다. 지경부 감사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 매년 받으니까?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작년에 받고 금년에 감사받은 결과를 확인하려 또 받았습니다.

○**임동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감사를 받아도 결과 시정이 잘 안 돼요, 자료를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매년 똑같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돌아가서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데…… 말씀하세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그것은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데, 중소기업들한테 인증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나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막 받아 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년·제작년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해서 ‘왜 이것 못 받고 있느냐?’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표준협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동규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챙겨 보세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예.

○임동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영실적도 그렇지만 직원들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떨어져요. 인센티브 좀 많이 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꾸 떨어진다는 것, 하여튼 직원들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2007년도 경영평가지표에서 C등급이 총 9개, D등급이 1개, E등급이 3개가 있고 2007년도 기관장에…… 기관장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때? 2007년도에 공석이었습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있었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역시 개선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부진한 경영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거고 또 인센티브가 자꾸 떨어지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기관평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상향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에 기관평가가 상당히 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자연적으로 인센티브가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부터 기관평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경영실적을 개선해야 되겠다, 부진해서야 되겠느냐, 향상시키자.’ 이렇게 해서 전 임원들이 아주 합심협력해서 한 가족과 같이, 인원이 51명 정원인데 아주 적어서 현재는 51명이 안 됩니다. 본부에는 지금 36명이구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가족과 같은 단합을 해서 2009년도에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더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원자력 수주 이후에 유일한 홍보기관의 직원으로서 이제는 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 위원입니다.

전력거래소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예.

○이종혁 위원 전력가격 정산 관련해서요. 발전사업자 고의적 규칙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한 2600건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자세한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 전기공급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3년간 얼마 정도가 낭비됐습니까, 전력거래소 부적정 정산으로 인해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지금 87억 원 정도……

○이종혁 위원 87억이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예.

○이종혁 위원 3년간 위반사례가 2585건에 이르고 87억의 부당 정산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됩니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전력공급에 있어서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0.5%인데 시장운영규칙이 그동안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정산 시 사후 확인이 좀 미흡했던 소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사장님, 보세요.

지금 전력거래소는 독점구조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업무는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예.

○이종혁 위원 뭐든지 간에 혼자서 하는 것은

나는 이걸 병폐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라고 변명하셔도 부당 정산이 이렇게 수천 건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그래서 지금……

○**이종혁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들어갈까요?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저희가 지금 시장운영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서 7월부터 규칙을 개정해서……

○**이종혁 위원** 87억 부정 정산된 것은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이것은 그전의 시장운영규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환수는……

○**이종혁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여기 영터리 정산방법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해바치고 싶지만 넘어갑니다. 이것 바로잡으세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정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시장운영규칙은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바로잡으십시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예.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원자력문화재단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근 위원님께서 해외 원전 홍보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잘 챙기시고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국내 원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그동안에 많은 노고를 하셔서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 내 수용이 아직까지도 31%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원자력발전소 지으면 동의하겠느냐?’ 국민 10명 중에서 기껏 3명이 동의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전의 르네상스시대고 1200조 시장에 대한민국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원전을 사라고 수출 독려를 하고 다녀야 될 텐데 정작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한 3명 정도만 하고, 이것은

70%는 부정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서 원전 수입을 하라고, 우리 것 좋다고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식경제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위원님……

○**이종혁 위원** 말로만…… 말씀하십시오.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해서 국내 원전에 대한 수용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현재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예산이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사업비예산은 70억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 국민들의 그릇된 판단이 폐기물처리시장에서도 엄청난 국력의 낭비, 시간 낭비, 그로 인해서 수천억, 수조의 국고가 낭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전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잘하십시오.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한국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세수탈루액이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오늘 발표 보니까 1조 8000억이대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1조 8000억 원으로……

○**이종혁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이종혁 위원** 이제는 보니까 아주 지능화되고 조직범죄화돼요. 조직폭력배들도 개입하고, 농협 직원들이 공모해서 면세유 관련해서 서류조작해 가지고도 이런 것 하고.

지금 석유관리원의 인력 및 예산 이것을 가지고 불법석유제품 단속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저희가 2009년 5월 1일자로 새로운 유통관리업무……

○**이종혁 위원**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한정된 7분이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인원과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현재 경찰청, 국세청과 이런 업무협조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협조체계는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저희가 유사석유대책협의회를 상설협의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조체계가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게 1조 8000억에나 이를 정도로 구멍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류의 것들을 가지고, 드디어 조직폭력배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이 인력·예산도 부족한데 그러면 협조해야 할 유관기관인 경찰이라든지 관세청과 이런 류의 업무협력체계가 잘돼 있느냐 그게 질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현재는 좀 미비합니다.

○**이종혁 위원** 미비하지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도 장관한테 말씀드려요. 이것을 갖다가 한국석유관리원 보고 맡겨 가지고 업무협력체계 잘되도록 하라 해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저희 부처가 좀 관여해서 책임지고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설협의체 부분에 관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대안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중 전과자에 대한 기록이 공유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류 유통경로가 실시간으로 해당기관과 공유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가 수입 메탄올입니다. 이것은 관세청을 통해서 실소비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불법유통 단속도 수입 메탄올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도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관세청 이런 데의 차량의 노상

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선제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한국석유관리원이 더 늘려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1년에 간혹 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오늘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이것은 제가 계속 챙길 거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의 조짐이 안 보이면 제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추궁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으십시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이것은 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최철국** 예.

○**이종혁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예.

○**이종혁 위원** 미국의 인원·예산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전략물자 전담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산도 선후 완급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전을 앞으로 전략적 국가성장산업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부수된 정책들이 전부 다 현실에 맞게끔 조율·조정돼야 됩니다.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되고 있다 이런 저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초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이종혁 위원** 지금 보유장비 실태를 제가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데 86%가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예, 맞습니다.

○**이종혁 위원** 기초전력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실태와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기관일 겁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2배 이상 된 걸 가지고, 이런 노후화된 연구장비를 가지고 기초전력연구원 본래 목적이 수행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방치하려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챙기십시오, 실장님.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이종혁 위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모델 제시 및 컨설팅이 부족하다 내가 지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이종혁 위원** 이게 정부 및 대학 컨설팅에만 치중하는 형식적으로 돼 가지고, 그러면 한국생산성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것 좀 챙기십시오.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이것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이종혁 위원** 토요타 사태 잘 아시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토요타 사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가 원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 안 하겠습니다.

공급망 품질경영이라는 것 아시지요?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 구축을 아주 좀 잘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소위 밴드 부품업체 쪽에서 하나가 잘못 핑크가 나서 전 세계에 리콜 사태 같은 비슷한 게 하나가 나오면 우리도 제2의 그런 사태 맞지 말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품질경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SCQM 제도 이것을 잘 확립해서 가지고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국회에다 보고를 좀 하십시오.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각자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이종혁 위원님께서서는 보충질의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보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인간 존중의 뉴생산성 향상 운동, 시대에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 '생산성의 세계'라는 비디오가 있다면서요, 동영상?

생산성본부 회장님!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위원장대리 최철국** 그것하고 그다음에 가슴 벅찬 일터를 비롯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관련되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종혁 위원님, 정태근 위원님, 최철국 위원, 배은희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노영민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우체창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께서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의 마지막까지 계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신 이종혁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정태근 위원님, 김용구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담아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용석	권성동	김기현	김성희
김용구	김정훈	노영민	박순자
배은희	우재창	이영애	이종혁
임동규	정장선	정태근	조승수
주승용	최철국		

○청가 위원(1인)

최연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전문위원	문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제1차관	안현호
무역투자실장	김경식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기술표준원장	허경
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특허청장	고정식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이천호
기술상무이사	김홍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
기초전력연구원장	설승기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한국표준협회장	최갑홍
전략물자관리원장	심성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0. 4. 19 김진표·박기춘·이찬열·최재성·조정식·홍영표·김영환·송영길·우재창·정장선 의원 발의)

4월 20일 회부됨